■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24.>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저작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 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소설),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 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 · 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 ·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ı	
	있는 사람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 · 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다. 최근 5년 동안「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 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 교양 프로 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 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 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 만화 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저작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단편소설(동화, 청소년소설)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	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1 -1 -1 \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함한다),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진, 건축	다.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
	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
0.01	는 사람
음악,	라. 최근 2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국악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2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무용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납기	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최근 2년 동안「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
영화	에서 상영되거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
	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
	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
	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
	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
어 에 (꺄수‡‡)	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예(演藝)	나. 최근 2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
	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는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에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 [*]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력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느
만화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고
	나.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 ⁽ 있는 사람	0]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고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형	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느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부 기준

-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3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